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용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2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용호, 강석주, 고광민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유만희, 유정인,
이봉준, 이성배, 이용균,
이원형, 이은림, 이종환,
최진혁, 홍국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(안 제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한”으로, “분담금”을 “분담금과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”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수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확대를 <u>위해</u> 건설일용 근로자의 국민건강·국민연금보 험료 <u>분담금</u>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한</u> ----- ----- ----- <u>분담금과 기상조건</u> <u>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</u> <u>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</u> <u>안정을 위한 수당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(안 제9조제2항)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(건설기술정책관) 문의 결과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